

本會 具玠會 會長 建設部長官 禮訪

本協會 新任 具玠會 會長은 安箕泰 理事를 대동, 지난 11月24日 午前 金周南 建設部長官 및 李圭孝 次官을 비롯하여 관계 主務局 課長을 禮訪하고 新任人事와 더불어 当面된 懸案問題를 長時間에 걸쳐 진지하게 거론하였으며 本協會 發足以來 가장 고무적이고 積極的인 協助로써 本協會 發展에 支援의 뜻을 表했다.

建築作品展示 및 講演會 開催

各市道支部總會 開催

全國 各市道支部 第15回 定期總會가 지난 11月 25日부터 12月 4日 사이 일제히 開催되었다.

本會 任員 및 各界 인사가 參席한 가운데 開催된 이번 定期總會는 主要 業務報告에 이어 任期完了된 任員 改善 및 定款改正에 따른 代議選出 等の 主要 案件이 處理되었는데 具玠會 會長은 激勵辭를 通하여 協會는 지난 代 議員 總會 決意事項을 마땅히 받아들여 차제에 協會像을 刷新하는 機會로 삼아 會員을 爲한 協會가 되어야 하겠으며 會員은 協會를 白眼視하는 傾向을 止揚하고 다 같이 總和團結하여 建築士의 參與 權益爭取에 合心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現在 協會는 建築景氣沈滯로 인한 歲入 不振으로 緊縮予算執行이 不可避하며 建築技術者의 母体인 設計事務所의 運營은 마땅히 國家的 次元에서 保護育成되어야 한다고 前題하고 이에 따른 源泉的인 問題를 비롯 累積된 懸案問題들을 衆知를 모아 最善의 方法으로 하나하나 解決해 나가겠다고 強調하였다.

本協會 濟州支部는 지난 11月13日 “80年度 現代 建築 作家 作品展示會를 開催하였다.

市内 남양美術會館에서 道 文化賞을 授賞한바 있는 金광추先生을 비롯하여 各界 인사가 參席한 가운데 開催된 이번 展示會는 正林建築(株) 金正澈 代表의 “廣場” 外 29個 作品이 出品되어 11月16日까지 4日間 展示되었다. 또한 지난 15日은 市内 自由會館에서 160餘名의 聽衆이 모인 가운데 建築講演會를 가졌는데 이날 講演會는 建築 評論家 金원氏가 “現代建築의 反省”이라는 演題로 講演하였다.

◎ 作品展示 開館式 光景



◎ 慶南支部總會 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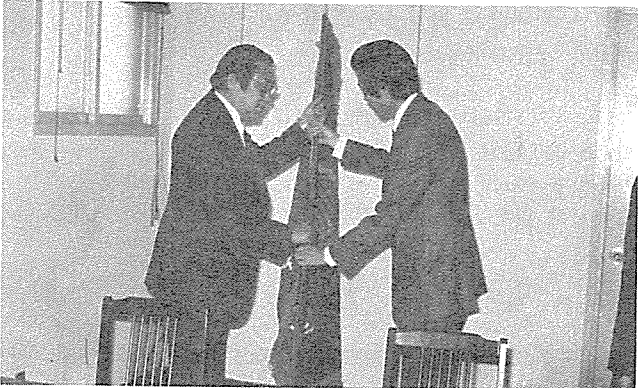


◎ 建築講演會 光景





◎協會業務를 引授하는 具琬會 會長



◎協會旗를 引授하는 具琬會 會長

新任 任員 첫 理事會 開催

新任 具琬會 會長 趣任后 첫 理事會가 11月 18日 14時에 協會 會議室에서 開催되었다.

理事 全員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된 이번 第 22回 理事會는 主要業務報告에 이어 各 市道支部의 總會開催 方針 決定의 件을 비롯하여 6個項 案件을 處理하고 自体淨化 推進委員會 委員長에 當然職으로 具琬會 會長, 倫理委員長에 安箕泰, 建築研究委員長에 閔榮基 理事를 各各 選任하였으며, 京畿道 支部所屬 利川分所 設置도 承認하였다.

本協會 81年度 事業計劃

* 第15回 定期總會에서 決議된 1981年度 事業計劃 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방향

- (1) 1981년도에는 건축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나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침체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므로 1981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인력만으로 가능한 조사연구사업의 확대에 둔다.
- (2) 건축사 업무에 관련된 각종 법규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 추진사업을 1981년도의 중점추진사업으로 한다.

- (3) 현상 설계 제도의 질서확립과 건축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
- (4) 협회의 고정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강습회, 세미나, 학술토론회, 국제교류등의 지도사업과 출판사업, 홍보선전사업, 전시사업 및 각종 행사등은 질적면에 치중하여 충실히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재개발 지구내에 있는 본회 회관의 이전을 위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5) 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업계에 정의로운 새 기풍을 확대 심화하고 효율적인 회원제도 활동을 전개하여 서정쇄신, 새마을 사업, 불우이웃돕기, 소비절약, 자연보호 운동등 범국민운동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진작시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사업계획

1. 회원복지 증진사업

- 1) 회원복지년금 지급제도의 지속적운영
 - 회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행 회원복지년금 지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동기금증식의 극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실시한다.
- 2) 공사감리기구의 설치운영
 - 지역별 공사감리 기구를 설치하여 감리업무 수행시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감리비의 수입증대에 기여한다.

2. 조사연구사업

- 1) 건축관계 제도 연구 및 개선
 - 건축사 업무에 관련된 각종 법규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
 - 건축사 해외용역 진출저해 요인을 조사연구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
- 3) 건축 현상 설계제도의 사회적 확충 방안연구
 - 건축 현상 설계제도의 사회적 확충을 위하여 본 협회에서 각종 현상설계의 공모 및 심사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시행한다.
- 4) 건축인력양성방안 연구
 - 회원사무소 보조원 수급의 원활과 국가의 기능 인력양성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기술 인력양성 방안을 연구한다.
- 5) 세계연구
 - 소득표준을 현실화 추진 완결
- 6) 회관 이전방안 연구
 - 재 개발지구내에 있는 본회 회관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한다.

3. 지도사업

- 1) 강습회 개최
 -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 및 구조계획 등의 새로운 지식을 강습회를 통하여 회원에게 보급하며, 보조원의 교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강습회를 실시한다.
- 2) 세미나 및 학술토론회
 - 국내외 선진기술의 보급확충을 위한 세미나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 3) 특별연수교육 실시
 - 81년도 건축사 특별전형시험에 대비하여 2급 건축사

회원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4) 국제교류사업

- 1) 외국 건축관계 단체와 상호자료 교환 추진
- 2) 해외 선진기술 도입 확충과 국내 건축기술의 해외소개를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해외시찰단을 파견한다.

5) 윤리위원회 활동강화

○ 윤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회원의 업무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6) 서정쇄신 및 자율정화운동적극 전개

○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서정쇄신 및 자율정화운동을 적극전개하여 업계에 정의로운 새기풍을 확대심화하여 새시대의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한다.

4. 출판사업

1) 회지발간

○ 본 협회 회지 "건축사"를 매월 3,200부 발행하여 회원 및 국내의 유관기관에 무료배부하여 업무에 활용케 한다.

2) 회원명부발간

○ 회원명부 2,500부를 발행하여 회원 및 유관기관에 무료배부.

3) 건축관계법령집 추록발간

○ 80년도에 발간된 건축관계법령집에 삽입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시 변경되는 건축관계 개정법령을 분기별로 수합 인쇄하여 회원에게 무료 배부한다.

5. 홍보선전 및 전시사업

1) 민원상담운영

○ 회원 및 건축주의 건축관계 민원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적극운영한다.

2) 매스컴을 통한 홍보 활동전개

○ 신문 및 TV, 라디오를 통하여 건축 및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의 건축수준향상과 건축사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3) 작품전시회 개최

○ 회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창작의욕의 증진과 설계기술의 개선향상에 기여한다.

4) 자재전시회 개최

○ 우수건축자재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수 건축자재의 사용을 권장하므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에 기여한다.

6. 행사 및 기타사업

1) 협회상 시상

○ 건축의 창작의욕 진작과 본 협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상하고 있는 협회상의 시상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개량 발전에 기여한다.

2) 회원 총화 단합대회 개최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지역별로 회원총화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3) 건축사 크럽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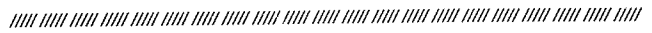
○ 회원들의 휴식처로 회관 1층에 건축사 크럽을 운영하므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한다.

4) 새마을 사업운동 전개

○ 회원의 새마을 사업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계도한다.

5) 소비절약 및 불우이웃돕기운동 전개

○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소비절약 및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本協會 81年度 予算

*第15回 定期總會에서決議된 1981年度 予算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설명

1981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특별회계를 폐쇄하여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회계의 일원화 및 업무간소화를 기하는 회계의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과속적인 건축경기의 불황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예산팽창을 억제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0년도 예산규모 637,000,000원에서 6% 가량인 39,000,000원만을 증액시킨 676,000,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 입

- 1. 총규모 676,000,000원으로서 39,000,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 회비수입면에서는 월정회비 159,600,000원 입회비 42,000,000원 실적회비 461,000,000원 계 662,600,000원으로서 85,532,608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으로서 실적회비 징수율을 0.4%에서 0.5%로 조정하였습니다.
- 3. 사업수입에서는 2,400,000원으로서 9,800,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4. 잡수입에서도 500,000원으로 편성 2,513,795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5. 이월금 역시 10,500,000원으로 편성 34,218,813원을 감액편성하므로써,
- 6. 총 세입 증액금이 39,000,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세 출

- 1. 세출역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676,000,000원으로서 39,000,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 회의비는 34,357,720원으로서 8,053,400원을 증액시켰으며,
- 3. 인건비는 277,000,630원으로서 38,357,93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현행 직원 급여액의 15%를 인상하는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4. 사무비는 65,710,880원으로서 13,147,420원을 증액 편성시켰으며,
- 5. 관리비는 61,410,817원으로서 13,511,887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비예산 분소에 대한 분소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 6. 사업비는 121,938,900원으로서 437,56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 7. 설비사업비는 51,360,000원으로서 253,600원을 감액편성하고 특이할 사항으로서는 특별회계에 있던 회원장례보조금을 목으로서 설정 편성하였습니다.
- 8. 판공비는 29,232,000원으로서 4,752,000원을 증액편성

9. 적립금은 17,581,140원으로서 18,418,86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이할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회관건립기금으로 기금조성해 오던것을 81년도 부터는 기금조성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기허 조성된 회관건립기금에 대하여는 1980년도 결산을 하여 직원퇴직적립금으로 목적변경을 결산총회시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10. 고정자산은 8,178,000원으로서 3,000,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1. 예비비는 9,229,913원으로서 21,156,447원이 감액된 상태로 편성하였습니다.
12.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한 결과 총 세출증액이 39,000,000원인 6%가량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세입 예산 총괄

과	목	FY80예산액	FY81예산액	비 교	
				증	감
회비수입		577,067,392	662,600,000	85,532,608	
	월 정 회 비	144,300,000	159,600,000	15,300,000	
	입 회 비	56,000,000	42,000,000		14,000,000
	실적회비	370,800,000	461,000,000	90,200,000	
	자산조성금	2,220,000	0		2,220,000
	찬조회비	3,747,392	0		3,747,392
사업수입					
	광고료수입	12,200,000	2,400,000		9,800,000
잡수입					
	이자수입	3,013,795	500,000		2,513,795
	기타수입	2,513,795	400,000		2,113,795
	기타수입	500,000	100,000		400,000
이월금					
	미수회비	44,718,813	10,500,000		34,218,813
	미수회비	3,537,720	2,000,000		1,537,720
	이월금	41,181,093	8,500,000		32,681,093
합 계		637,000,000	676,000,000	39,000,000	

(3) 세출 예산 총괄

과	목	FY80예산액	FY81예산액	비 교	
				증	감
회 의 비		26,304,320	34,357,720	8,053,400	
	총 회 비	12,740,240	18,660,280	5,920,040	
	이사회회비	3,914,800	4,495,680	580,880	
	지부장회비	3,985,200	4,577,760	592,600	
	위원회의비	1,344,000	1,344,000		
	간사회회비	4,320,000	5,280,000	960,000	
인 건 비		238,624,700	277,000,630	38,375,930	
	급 료	131,106,540	159,828,860	28,722,320	
	수 당	87,062,240	109,180,280	22,118,040	
	복리후생비	6,554,500	7,991,490	1,436,990	
	퇴직적립금	13,110,650	0		13,110,650
	보 상 금	1,500,000	0		1,500,000
사 무 비		52,563,460	65,710,880	13,147,420	
	여 비	12,930,000	17,960,080	5,030,080	
	통 신 비	22,443,600	27,466,200	5,022,600	
	소 모 품 비	5,312,400	6,042,000	729,600	
	도서및인쇄비	11,877,460	14,242,600	2,365,140	
관 리 비		47,898,930	61,410,817	13,511,887	
	수도광열비	11,389,200	14,276,880	2,887,680	
	수선및수료	3,772,800	7,472,800	3,700,000	
	차 량 비	6,296,320	6,061,071		235,249
	분소보조금	11,376,000	18,216,000	6,840,000	
	보 험 료	215,000	574,606	359,606	
	지부보증금	10,000,000	10,000,000		
	공 과 잡 비	4,849,610	4,809,460		40,150

과	목	FY80예산액	FY81예산액	비 교	
				증	감
사 업 비		122,377,460	121,938,900		437,560
	지도사업비	20,700,000	18,700,000		2,000,000
	조사연구비	22,331,460	20,152,000		2,179,460
	출판사업비	53,196,000	55,748,000	2,552,000	
	교육훈련비	11,000,000	9,057,900		1,942,100
	홍보선전비	1,590,000	2,385,000	795,000	
	행 사 비	13,560,000	15,896,000	2,336,000	
섭외사업비		51,613,600	51,360,000		253,600
	섭 외 비	12,480,000	14,976,000	2,496,000	
	경 조 비	10,133,600	12,384,000	2,250,400	
	회원경제보조금	15,000,000	10,000,000		5,000,000
	세마을사업비	14,000,000	14,000,000		
관 공 비		24,480,000	29,232,000	4,752,000	
	관 공 비	24,480,000	29,232,000	4,752,000	
적 립 금		36,000,000	17,581,140		18,418,860
	퇴직적립금	0	15,982,860	15,982,860	
	보 상 금	0	1,598,280	1,598,280	
	회관건립기금	36,000,000	0		36,000,000
고정자산					
	비 품 비	5,178,000	8,178,000	3,000,000	
예 비 비		30,386,360	9,229,913		21,156,447
	예 비 비	30,386,360	9,229,913		21,156,447
합 계		637,000,000	676,000,000	39,000,000	

과	목	구 분	FY80예산액	FY81예산액	비 교	
					증	감
총규모						27,695,820
		본 부	327,486,250	299,790,430		
		서울지부	81,049,555	93,397,550	12,347,995	
		부산지부	32,760,775	39,560,240	6,799,465	
		경기지부	30,644,065	39,019,070	8,375,005	
		강원지부	16,880,475	21,114,880	4,234,405	
		충북지부	15,705,250	19,386,850	3,681,600	
		충남지부	22,392,365	27,255,620	4,863,255	
		전북지부	15,637,080	19,992,510	4,355,430	
		전남지부	23,008,250	28,015,410	5,007,160	
		경북지부	33,973,480	43,128,660	9,155,180	
		경남지부	23,229,445	27,843,130	4,613,685	
		제주지부	14,233,010	17,495,650	3,262,740	
		지부합계	309,513,750	376,209,570	66,695,820	
		총 합 계	637,000,000	676,000,000	39,000,000	

本協會 定 款

* 第15回 定期總會에서 改正 되어 1980. 11. 21일 부터 施行될 協會定款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에 따른 상근 부회장제도의 신설과 협회운영상 일 부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의 요지

- (1) 개정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라 상근부회장 제도를 신설함.
- (2) 현행 정관 제21조 제④항의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 단 위로 정족수의 2/3 이상이 건축사라야 한다"는 규정을 삭

- (3) 가급적 많은 회원이 협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회원 30인에 1인의 비율로 선출되는 대의원을 회원 20인에 1인의 비율로 선출되도록 하였으며, 본 협회 최고의 결기관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취임승인제도를 폐지함.
- (4) 분소 설치 및 포상근거규정을 명문화 함과 동시 건축에 관한 지도사업과 각종 현상 설계심사대행사업을 사업종목에 추가 규정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본 협회의 공익성을 설립목적에 명백히 함.

制定 1965. 12. 3
 改正 1966. 11. 8 1967. 3. 24
 1968. 7. 15 1970. 3. 6
 1971. 11. 26 1983. 10. 27
 1974. 7. 9 1974. 12. 30
 1976. 4. 14 1977. 3. 9
 1977. 10. 29 1978. 12. 21
 1979. 5. 2 1980. 11. 21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 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라 칭한다.
- 제 2 조 (구성) ① 본 협회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둔다.
 ③ 각 지부는 필요에 따라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본 협회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옹호·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무소)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지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각도의 도청소재지에 둔다.
- 제 5 조 (사업) 본 협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축 및 건축사업부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시공기술에 관한 지도·감정.
 3. 회원의 업무윤리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건축에 관한 교육작품 발표 및 자재전시.
 5. 건축에 관한 국제기구에의 참여와 국제교류.
 6. 회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본 협회의 기관지 간행 및 출판.
 8. 건축에 관한 각종 현상설계 공모 및 심사대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 3 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② 본 협회는 건축 및 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 ③ 본 협회는 건축사업부보수의 기준을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 7 조 (회원) ① 본 협회의 정회원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

- 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한다.
- ② 본 협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외에 다음 각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1. 추대회원 : 본 협회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또는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총회에서 추대받은자.
 2. 명예회원 : 저명한 건축가 및 본회에 공로가 지대한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받은자.
 3. 찬조회원 : 본 협회의 사업목적을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받은자.

-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임원, 지부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협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협회의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협회사업의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추대회원은 월정회비를 면제하고 명예회원은 각종회비를 면제한다.
- 제 9 조 (포상) 건축계 및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포상할 수 있다.

- 제 10 조 (징계) ① 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보전을 저해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견책.
 2. 자격정지.
- ② 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부장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견책.
 2. 1년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자격정지.

- 제 11 조 (자격상실) ① 회원이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폐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기간동안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 협회의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1. 사망.
 2. 폐업.
 3.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
- 제 12 조 (제명)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협회의 명예훼손하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 제 13 조 (임원) 본 협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상근) : 1명
 3. 이사 : 5명
 4. 감사 : 2명
- 제 14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대

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며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선출) ① 회장·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중 총회에 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이사·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중 이사 3명 감사 1명의 임기는 초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90일 이내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원은 후임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취임승인) 임원중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취임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고문)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저명한 인사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 (회의) 본 협회에는 다음 의회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위원회

제20회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 단위로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20인 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그 단수가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1인을 더 선출하며 역대 회장과 각 지부장은 선출원인에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이 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1조 (총회소집공고)

①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10일전에 총회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회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서울 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임원 (부회장을 제외한다)개선
3. 회원의 계명
4. 사업계획 및 보고서,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보수규정, 예비규정, 설

계도의 신고사무 취급 규정, 휴업 및 폐업에 관한 규정, 분소설치 및 운영규정, 전결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7. 기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제22조제 6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정의 개정 및 임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 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감사 및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 본협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윤리위원회
2. 편찬위원회
3. 연구위원회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2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위원약간명을 두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한 이사회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각종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사무 기구 및 보수

제27조 (사무처) ① 본 협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수있다.

1. 총무부
2. 기술부
3. 출판사업부
4. 기획조사실

③ 사무처 직원의 수 및 그 임명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급여) ① 부회장 및 사무처직원은 유급으로하며 보수액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 및 위원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하고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정) ① 본 협회의 재정은 입회비, 정회원비, 찬조회비 및 사업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 정회원이 되었을때 납부하는 입회금
2. 정회원비 : 정회원이 납부하는 월정회비 및 설계사업실적에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는 실적회비
3. 찬조회비 : 찬조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타 찬조금
4. 사업수입 : 회지 및 도서출판에 따른 광고료 간행물 배부 및 기타 사업의 부대수입

6. 수수료: 감정 및 제품명 수수료

7. 기타수입: 기타 잡수입

② 입회비 및 정회원회비의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은 매년 총회에서 정하되 예산승인시 병행하여 정하며 찬조회비, 사업수입 수수료의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 (회계) ① 본 협회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며 동년 12월31일에 마감한다. 다만, 해당 년도 중에 확장된 수익금과 지출금의 수납 및 지출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협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1조 (결산서 제출) 회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하며 3월말일 까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지부

제32조 (지부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간사(간사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원100명이내 지부 2명
 - 나. 회원101명 - 300명 지부 3명
 - 다. 회원301명이상: 5명
3. 분소장: 분소당 1명

제33조 (지부임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회무를 통리하고 지부총회 및 간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지부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③ 간사회는 지부장과 간사로서 조직하며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34조 (지부임원 및 대의원선출) ① 지부임원 및 대의원은 정회중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부임원의 취임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대의원의 명단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① 지부장 및 간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분소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보선과 그 임기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분소설치) 지부에서분소를설치코저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지부회의) 지부에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간사회
3. 위원회

제38조 (지부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지부소속 정회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1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1.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소속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39조 (지부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및 대의원 개선
2.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0조 (지부총회의 소집과 성원) 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회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정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회) ① 지부에는 도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 (사무국) ① 지부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
2. 기술지도
- ③ 사무국 직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보수) ① 사무국직원은 유급으로하며 보수액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 및 위원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44조 (승인) 지부가 총회를 가졌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석회원 및 임원명단.
2. 의결된 내용
3. 총회 안전등 유인물 및 기타 참고서류

제44조 (추가사업) 지부가 승인된 당해년도 운영 계획에 의한 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실시 10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가사업 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서

제46조 (보고) ① 지부는 매월 10일까지 회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회에 보고한다.

1. 전월의 일반 회무 보고서
2. 전월의 사업보고서 및 회계보고서
3. 그달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계획서

② 월에 보고외에 특수사항 또는 돌발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협회에 보고한다.

제47조 (지부의 재정) ① 지부의 재정은 협회에서 배정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지부에 배정하는 예산은 협회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48조 (지부회계년도) 지부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당해 년도중에 확장된 수익금과 지출금의 수납 및 지출은 다음연도 1월20일까지로 한다.

제49조 (결산서 제출) 지부장은 매년 1월말일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하며 다음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43

본 정관은 1980. 11. 21 일 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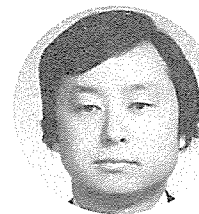
會員動靜

■ 서울支部 新入會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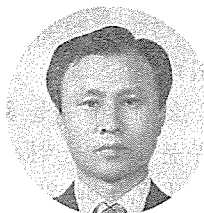
本 籍 : 서울
 姓 名 : 이 중우
 名 稱 : 우정건축기술연구소
 所 在 地 : 강남구 역삼동 366-27
 電 話 : 57-0568
 免許番号 : 1589
 登録番号 : 단독 193
 月 日 : 10. 10



本 籍 : 전북
 姓 名 : 김 선양
 名 稱 : 한국종합기술개발
 所 在 地 : 용산구 한남동567-147
 電 話 : 794-0554
 免許番号 : 1605
 登録番号 : 합동 104
 月 日 : 10. 15



本 籍 : 충남
 姓 名 : 이 중구
 名 稱 : 제일종합건축
 所 在 地 : 강남구 청담동325-10
 電 話 : 57-0311
 免許番号 : 613
 登録番号 : 종합 1
 月 日 : 10. 13



本 籍 : 서울
 姓 名 : 양 영일
 名 稱 : 한샘건축연구소
 所 在 地 : 용산구 이태원동260-199
 電 話 : 792-3383
 免許番号 : 1612
 登録番号 : 합동 255
 月 日 : 10. 16



本 籍 : 전북
 姓 名 : 허 강
 名 稱 : 제일종합건축
 所 在 地 : 강남구 청담동325-18
 電 話 : 57-0311
 免許番号 : 557
 登録番号 : 종합 1
 月 日 : 10. 13



■ 忠北支部 會員 事務所 移轉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월일
정진경	중앙건축연구소	대전시 중구 신화동97	2-3333	267	합동 19	10.11
강성덕	중앙건축연구소	대전시중구신화동292-2	2-3333	2-895	합동 19	10.11

■ 서울支部 會員 事務所 移轉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일자
김수학	금학건축설계	중구 무교동 8	794-1442	1665	단독 189	9. 4
김용인	(주)삼도건축	용산구 한강로 가363-120		919	합동 257	9. 4
강효석	(주)삼도건축	용산구 한강로 3가63-120	792-0126	1675	합동 257	9. 4
박환인	아주건축공단 박환인연구소	강남구방배동50		2-1576	단독 187	9. 4
김무영	한국환경설계연구소	영등포구 여의도동1-696		1264	단독 1290	9.12
김철영	효성건축연구소	마포구 성산동 51-17	35-8722	643	단독 191	9.12
김민술	국제건축기술공사	관악구 봉천동 399-1		337	단독	9.19
이승목	아남건축	중구 을지로 6가31	265-6657	1688	단독 196	9.19
김기웅	건축설계연구소삼정	종로구 행촌동 27-5	72-7833	37	단독 195	9.22
유영근	매일건축연구소	중구 충무로 4 125-1	265-7898	1118	단독 198	9.25
심기섭	청송·상신건축연구소	강동구 천호동 403-21	478-5242	2-402	합동 259	9.25

■ 京畿支部 転入會員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월일
정창규	유진건축설계연구소	인천시 북구 부평동109		236	단독 65	8.29
윤진	대성건축연구소	의정부시 의정부동191-7	2184	386	67	10.15

■ 慶北支部 會員 事務所 移轉 및 登録事項 変更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월일
김희영	남양건축사무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 1-3	44-1544	1685	합동 71	10.15
임봉수	남양건축사무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 1-3	44-1544	2-1813	합동 71	10.15
홍성규	환경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중구공평동 13-4	45-4450	1484	합동 40	10.20
김원	환경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중구 공평동13-4	45-4450	2-1072	합동 40	10.20
배기호	환경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중구 공평동13-4	45-4450	2-1048	합동 40	10.20
이봉욱	대안건축사합동사무소	안동시 서부동99-9	2-9988	2-21	합동 79	10.16
이홍로	신홍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 삼덕동 1가 1-10	44-6864	980	단독 47	10.27
여옥동	대구종합건축	대구시 중구 삼덕동 3-10 2가	45-3616	1266	종합 1	10.27
윤옥	도시종합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 동문동 13	46-3216	776	종합 2	10.30